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42호 2019. 8. 1.(목)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9-100호 송정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9-1038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20

남해군 공고 제2019-1041호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2

알 림

남해군 상하수도 사업소 고시 제2019-2호 남해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공고 29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9 - 100호

송정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송정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제3항 및 제80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남해군청 관광진흥담당관실(055-860-8655) 및 미조면행정 복지센터(055-860-8206)에 비치된 관련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1일

남 해 군 수

남 해 군 공 보

(2) 제 642 호

2019년 8월 1일

1. 관광지명 : 송정관광지(변경없음)
2. 위 치 :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120-1번지 일원(변경없음)
3. 조성면적 : 604,018㎡
4. 관광지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조성계획 면적 (㎡)			구성비(%)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총 계	603,358	604,018	660	100.0	
공공편익시설지구	105,974	106,259	285	17.6	도로 증가(증285㎡)
숙박시설지구	169,738	166,993	△ 2,745	27.6	숙박시설지구 변경(감2,745㎡)
상가시설지구	29,156	29,156	0	4.8	-
운동·오락시설지구	5,112	5,112	0	0.9	-
휴양·문화시설지구	36,167	40,189	4,022	6.7	야영장(증2,460㎡), 및 조경휴게소(증1,562㎡)변경
기타시설지구	257,211	256,309	△ 902	42.4	조경휴게소 변경에 따른 축소

5. 관계도면 : 실음생략
6. 관련도서 비치 : 남해군청 관광진흥관담당관실 및 미조면행정복지센터
 - 가.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 나.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 다.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서

<붙임>

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 ① 관광지명 : 송정관광지
- ② 위 치 :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일원
- ③ 지정면적 : 604,018m²
- ④ 사업기간 : 당초 1998.10.15 ~ 2019.05.10

→ 변경 1998년 ~ 2021년

- ⑤ 관광지 조성권자 : 남해군수
- 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1. 시설지구계획

구 분	부지면적 (m ²)			구성비 (%)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총 계	603,358	604,018	660	100.0	
공공편익시설지구	105,974	106,259	285	17.6	주차장, 우수처리장, 샤워탈의장/화장실, 관리사무소, 마을회관, 도로
숙박시설지구	169,738	166,993	△2,745	27.7	관광숙박·편의시설
상가시설지구	29,156	29,156	-	4.8	음식점, 상가
운동·오락시설지구	5,112	5,112	-	0.9	게이트볼장, 해수풀장
휴양문화시설지구	36,167	40,189	4,022	6.6	야외공연장,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공원, 전망대, 조경휴게소
기타시설지구	257,211	256,309	△902	42.4	녹지

남 해 군 공 보

(4) 제 642 호

2019년 8월 1일

2. 시설지구별 세부계획(변경)

구 분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비고	
	기정	변경	증(Δ)감	기정	변경	증(Δ)감					
총계	603,358	604,018	660	186,400	184,640	△1,760	-	-		-	
공공의시설지구	소 계	105,974	106,259	285	3,600	3,600	-	-	-	-	-
	주 차 장	24,112	24,112	-	-	-	-	-	-	-	가-1~2
	오수처리장	2,828	2,828	-	1,000	1,000	-	40	100	1	가-3~4
	샤워탈의장/화장실	451	451	-	350	350	-	40	100	2	가-5
	관리사무소	2,390	2,390	-	1,900	1,900	-	40	100	2	가-6~7
	마을회관	436	436	-	350	350	-	40	100	2	가-8
	도 로(변경)	75,757	76,042	285	-	-	-	-	-	-	-
숙박시설지구	소 계	169,738	166,993	△2,745	137,300	133,590	△3,710	-	-	-	-
	관광숙박편의시설(변경)	169,738	166,993	△2,745	137,300	133,590	△3,710	40	100	2,4	나-1~17
상가시설지구	소 계	29,156	29,156	-	22,500	22,500	-	-	-	-	-
	음 식 점	3,217	3,217	-	2,500	2,500	-	40	100	2	다-1~2
	상 가	25,939	25,939	-	20,000	20,000	-	40	100	2	다-3~9
운동오락지구	소 계	5,112	5,112	-	-	-	-	-	-	-	-
	게이트볼장	1,065	1,065	-	-	-	-	-	-	-	라-1
	해수풀장	4,047	4,047	-	-	-	-	-	-	-	라-2
휴양문화시설지구	소 계	36,167	40,189	4,022	23,000	24,950	1,950	-	-	-	-
	야외공연장	498	498	-	-	-	-	-	-	-	마-1
	청소년수련원	10,884	10,884	-	8,700	8,700	-	40	100	4	마-2
	야영장(변경)	5,308	7,768	2,460	4,200	6,150	1,950	40	100	2	마-3~4,9
	공 원	8,563	8,563	-	3,400	3,400	-	40	100	2	마-5~6
	전 망 대	6,492	6,492	-	5,000	5,000	-	-	-	-	마-7
	조경휴게소(변경)	4,422	5,984	1,562	1,700	1,700	-	40	100	4	마-8
기타시설지구	소 계	257,211	256,309	△902	-	-	-	-	-	-	-
	녹 지(변경)	257,211	256,309	△902	-	-	-	-	-	-	바-1

㉚ 사업비

1. 총 투자계획(변경)

- 총사업비 : 115,906백만원(공공 20,663, 민간 95,243)
- 투자사업비 총괄

구 분	총 계(백만원)		공공부문(백만원)				민자부분 (백만원)
			소 계	국 비	도비	군비	
1단계(2016까지)		35,283	20,663	9,616	2,734.8	8,312.2	14,620
기정 2단계 (2017~2019)	115,906	80,623	-	-	-	-	80,623
변경 2단계 (2017~2021)							

2.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조성계획 사업비					비 고
		공공부문				민자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115,906.0	20,663.0	9,616.0	2,734.8	8,312.2	95,243.0	
2007 까지	32,121.0	17,501.0	8,035.0	2,410.5	7,055.5	14,620.0	
2008	-	-	-	-	-	-	
2009	-	-	-	-	-	-	
2010	600.0	600.0	300.0	90.0	210.0	-	
2011	1,562.0	1,562.0	781.0	234.3	546.7	-	
2012	850.0	850.0	500.0	-	350.0	-	
2013	-	-	-	-	-	-	
2014	-	-	-	-	-	-	
2015	150.0	150.0	-	-	150.0	-	
2016	-	-	-	-	-	-	
2017 이후	80,623	-	-	-	-	80,623	

남 해 군 공 보

(6) 제 642 호

2019년 8월 1일

나.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①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1) 남해군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79,489,555.7	증)660	579,490,215.7	100.00			
육지부합계	357,677,991.7	증)660	357,678,651.7	61.72			
도 시 지 역	소계	11,801,283.0	-	11,801,283.0	2.04		
	주 거 지 역	소계	1,264,968.0	-	1,264,968.0	0.22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190,548.0	-	1,190,548.0	0.21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74,420.0	-	74,420.0	0.01	
	상 업 지 역	소계	183,713.0	-	183,713.0	0.03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83,713.0	-	183,713.0	0.03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 업 지 역	소계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농 지 지 역	소계	10,352,602.0	-	10,352,602.0	1.79	
		보전농지지역	-	-	-	-	
		생산농지지역	2,569,007.0	-	2,569,007.0	0.45	
		자연농지지역	7,783,595.0	-	7,783,595.0	1.34	
	관 리 지 역	소계	136,570,528.7	증)660	136,571,188.7	23.56	
		관리지역	-	-	-	-	
		보전관리지역	47,236,052.1	-	47,236,052.1	8.15	
생산관리지역		53,325,240	-	53,325,240	9.20		
계획관리지역		36,009,236.6	증)660	36,009,236.6	6.21		
농림지역	153,977,522.0	-	153,977,522.0	26.57			
자연환경보전지역	55,328,658.0	-	55,328,658.0	9.55			
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221,811,564.0	-	221,811,564.0	38.28		

주) 용도지역 기준은 남해군 고시 제2019-24호(2019.02.28.) 기준임[남해군관리 계획(용도지역,유원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2) 송정관광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03,358	증)660	604,018	100.0	
계획관리지역	603,358	증)660	604,018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m ²)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	미조면 송정리 1130 일원	계획관리 지역	603,358	증)660	604,018	200	· 지적경계정정 등에 따른 송정관광지 구역 변경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변경

② 용도지구(관광·휴양)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송정 관광지 개발진흥 지구	관광 · 휴양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707일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개발	603,358	증)660	604,018	1994.10.21 (경고 제1994-244호)	

■ 개발진흥지구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 내용	지구의세분
①	송정 관광지 개발진흥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계획 면적 증가 - 603,358m² → 604,018m² - 증 660m² 	· 지적경계정정 등에 따른 송정관광지 구역 변경에 따라 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변경

남 해 군 공 보

(8) 제 642 호

2019년 8월 1일

다.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송정 관광지	관광· 휴양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707번지 일원	603,358	증)660	604,018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①	송정 관광지 지구단위계획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707번지 일원 · 603,358m² → 604,018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정관광지 남측 대명리조트 부지 진입도로 반영 및 관광실크로드 사업(조경휴게소)에 따른 구역경계 변경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

구 분	면 적 (m ²)			구 성 비 (%)	비 고
	당초	변경	변경후		
총 계	603,358	증) 660	604,018	100.0	
공공편익지구	105,974	증) 285	106,259	17.6	
숙박시설지구	169,738	감) 2,745	166,993	27.7	
상가시설지구	29,156	-	29,156	4.8	
운동·오락지구	5,112	-	5,112	0.9	
휴양·문화지구	36,167	증) 4,022	40,189	6.6	
기타시설지구	257,211	감) 902	256,309	42.4	

나.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도입시설지구		시설지구 내 설치하는 시설			도입시설지구		시설지구 내 설치하는 시설				
구분	면적 (㎡)	비율 (%)	시설명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총면적	603,358	100.0				604,018	100			증660	면적증가
공공 편의 시설 지 구	105,974	17.7	소 계	105,974	100.0	106,259	17.6	106,259	100	증285	
			주 차 장	24,112	22.7			24,112	22.7	-	
			오수처리장	2,828	2.7			2,828	2.7	-	
			샤워탈의장/ 화장실	451	0.4			451	0.4	-	
			관리사무소	2,390	2.3			2,390	2.2	-	
			마을회관	436	0.4			436	0.4	-	
			도 로 (변경)	75,757	71.5			76,042	71.6	증285	조경휴게소와 중복구간 (630㎡) 포함한 면적
숙박 시설 지 구	169,738	28.1	소 계	169,738	100.0	166,993	27.7	166,993	100	감2,745	
			관광숙박·편 의시설(변경)	169,738	100.0			166,993	100	감2,745	
상가 시설 지 구	29,156	4.8	소 계	29,156	100.0	29,156	4.8	29,156	100	-	
			음 식 점	3,217	11.0			3,217	11	-	
			상 가	25,939	89.0			25,939	89	-	
운동 오락 지 구	5,112	0.8	소 계	5,112	100.0	5,112	0.9	5,112	100	-	
			게이트볼장	1,065	20.8			1,065	20.8	-	
			해수풀장	4,047	79.2			4,047	79.2	-	
휴양 문화 시설 지 구	36,167	6.0	소 계	48,317	100.0	40,189	6.6	40,189	100	증4,022	
			야외공연장	498	1.2			498	1.2	-	
			청소년수련 원	10,884	27.1			10,884	27.1	-	
			야 영 장 (변경)	5,308	14.7			7,768	19.3	증2,460	1개소 신설
			공원	8,563	21.3			8,563	21.3	-	
			전 망 대	6,492	16.1			6,492	16.2	-	
			조경휴게소 (변경)	4,422	11.0			5,984	14.9	증1,562	도로와 중복 구간(630㎡) 제외한 면적
기타 시설 지 구	257,211	42.6	소 계	257,211	100.0	256,309	42.4	256,309	100	감902	
			녹 지(변경)	257,211	100.0			256,309	100	감902	

남 해 군 공 보

(10) 제 642 호

2019년 8월 1일

■ 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공공·편익 시설지구	○ 면적 증가: 285m ² - 105,974m ² → 106,259m ²	· 대명리조트 부지 진입도로 현황 반영을 위한 도로선형조정에 따른 도로면적 증가
변경	숙박시설 지구	○ 규모축소: 2,745m ² - 169,738m ² → 166,993m ²	· 야영장 추가(848번지) 및 대명리조트 부지 진입도로 현황 반영을 위한 도로선형조정에 따른 숙박시설(나-12, 15)면적축소
변경	휴양·문화 시설지구	○ 규모증가: 4,022m ² - 36,167m ² → 40,189m ²	· 야영장 추가(848번지) 및 조경휴게소 변경에 따른 시설지구 면적 증가
변경	기타시설 지구	○ 규모축소: 902m ² - 257,211m ² → 256,309m ²	· 기존 녹지내 조경휴게소 확장에 따른 시설지구 면적 축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구분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계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기정	계	26	8,957	75,757	4	3,636	38,385	5	2,315	19,589	17	3,006	17,783
변경	계	26	8,872	76,042	4	3,636	38,552	6	2,363	20,078	16	2,873	17,412
기정	중로	1	80	991	-	-	-	-	-	-	1	80	991
변경	중로	1	80	991	-	-	-	-	-	-	1	80	991
기정	소로	25	8,877	74,766	4	3,636	38,385	5	2,315	19,589	16	2,926	16,792
변경	소로	25	8,792	75,051	4	3,636	38,552	6	2,363	20,078	15	2,793	16,421

(2)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80	소로1-1	소로2-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1	10	보 조 간선도로	2,053	1125-4도	1009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95	1218-1도	소로2-2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903	소로2-5	962-3도	일반 도로			
변경	소로	1	3	10~1 3.5	국지도로	903	소로2-5	962-3도	일반 도로			

(표 계속)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585	소로1-1	소로1-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	8	보 조 간선도로	565	소로1-1	산325-2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444	소로1-1	소로3-1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31	소로2-1	소로2-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713	소로1-1	소로2-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	9	국지도로	462	소로2-4	소로1-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	7	국지도로	578	소로1-1	727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73	소로3-6	소로1-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3	6~7	국지도로	805	소로2-2	1034-5잡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87	소로1-1	1030양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55	소로3-3	소로3-1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170	소로3-3	소로1-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32	소로2-4	산327-1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34	소로2-4	1462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9	6	국지도로	133	소로1-3	896-2임	일반 도로			
변경	소로	2	6	7~1 1.5	국지도로	48	소로1-3	896-2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157	소로1-1	산348-12 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1	1.5	산책로	18	소로3-3	소로3-13	산책로			
기정	소로	3	12	6.0	국지도로	67	소로3-1	1230-1전	산책로			
기정	소로	3	13	3~4	산책로	678	소로3-3	산281-8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4	1.5	산책로	14	소로3-3	소로3-1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5	2.0	산책로	13	소로3-3	소로3-1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6	1.5	산책로	12	소로3-3	소로3-13	일반 도로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소로1-3	소로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 선형변경 폭원변경 B=10m→10~13.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명리조트 부지 진입도로 가·감차로 현황반영을 위한 도로 선형 및 폭원변경
소로3-9	소로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 선형변경 폭원변경 B=6m→7~11.5m 노선축소 L=133m→48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명리조트 부지 진입도로 현황반영을 위한 도로 선형 및 폭원변경 노선연장 오류 정정

나. 주차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4,112	-	24,112		
기정	가-1	주차장	미조면 송정리 1139일원	20,931	-	20,931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가-2	주차장	미조면 송정리 1007-2일원	3,181	-	3,181	경남고시 2015-173 (2015.4.9)	

다. 하수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828	-	2,828		
기정	16	송정 하수도1	미조면 송정리 1176-1	1,430	-	1,430	남해고2009-1 0 (2009.2.2)	
기정	가-3	송정 하수도2	미조면 송정리 1018	1,398	-	1,398	경남고시 2015-173 (2015.4.9)	

라. 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563	-	8,563	-	
기정	마-5	송정 공원1	소공원	미조면 송정리 754	927	-	927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마-6	송정 공원2	소공원	미조면 송정리 752	7,636	-	7,636	경남고시 2015-173 (2015.4.9)	

마.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57,211	감)902	256,309	-	
기정	바-1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369-1번지 일원	14,817	-	14,817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2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176-2번지 일원	47	-	47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3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170번지 일원	397	-	397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4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136-1번지 일원	11,304	-	11,304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5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067-3번지 일원	1,331	-	1,331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6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067번지 일원	541	-	541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7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064번지 일원	445	-	445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8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063번지 일원	621	-	621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9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063-1번지 일원	424	-	424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0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753번지 일원	3,123	-	3,123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1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748번지 일원	6,964	-	6,964	경남고시 2015-173 (2015.4.9)	

(표 계속)

남 해 군 공 보

(14) 제 642 호

2019년 8월 1일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바-12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06-1번지 일원	2,782	-	2,782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3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05번지 일원	190	-	190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4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40-24번지 일원	778	-	778	경남고시 2015-173 (2015.4.9)	
변경	바-15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50번지 일원	84,997	감)902	84,095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6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48-12번지 일원	6,518	-	6,518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7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857-6번지 일원	20,832	-	20,832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8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31번지 일원	9,646	-	9,646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9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837-6번지 일원	443	-	443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20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22-2번지 일원	113	-	113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21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54-2번지 일원	64,099	-	64,099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22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24-1번지 일원	12,995	-	12,995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23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904번지 일원	13,804	-	13,804	경남고시 2015-173 (2015.4.9)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바-15	녹지	○ 면적감소(감 902m ²) : 84,997m ² → 84,095m ²	• 조경휴게소 확장에 따른 경계조정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기정	603,358	-	603,358	증 660㎡		
		변경	604,018	-	604,018			
공공편의 시설지구	가	소계	기정	105,974	-	105,974	증 285㎡	
			변경	106,259	-	106,259		
		가-1	20,931	미조면 송정리 1139번지 일원	20,931	주차장		
		가-2	3,181	미조면 송정리 1007-2번지 일원	3,181	주차장		
		가-3	1,398	미조면 송정리 1018번지 일원	1,398	오수처리장		
		가-4	1,430	미조면 송정리 1176-3번지 일원	1,430	오수처리장		
		가-5	451	미조면 송정리 1175-6번지 일원	451	샤워탈의장/화장실		
		가-6	1,063	미조면 송정리 1124-6번지 일원	1,063	관리사무소		
		가-7	1,327	미조면 송정리 1067-15번지 일원	1,327	관리사무소		
		가-8	436	미조면 송정리 1065번지 일원	436	마을회관		
		-	기정	75,757	-	75,757	도로	
			변경	76,042	-	76,042	(증 285㎡)	
		숙박 시설지구	소계	기정	169,738	-	169,738	감 2,745㎡
				변경	166,993	-	166,993	
			나-1	7,073	미조면 송정리 1230-2번지 등 일원	7,073	관광숙박·휴게시설	
나-2	25,852		미조면 송정리 1104번지 등 일원	25,852	관광숙박·휴게시설			
나-3	3,045		미조면 송정리 719-1번지 등 일원	3,045	관광숙박·휴게시설			
나-4	2,072		미조면 송정리 1036번지 등 일원	2,072	관광숙박·휴게시설			
나-5	4,827		미조면 송정리 1030번지 등 일원	4,827	관광숙박·휴게시설			
나-6	18,687		미조면 송정리 855번지 등 일원	18,687	관광숙박·휴게시설			
나-7	10,698		미조면 송정리 857번지 등 일원	10,698	관광숙박·휴게시설			
나-8	8,164		미조면 송정리 854번지 등 일원	8,164	관광숙박·휴게시설			
나-9	7,290		미조면 송정리 830번지 등 일원	7,290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0	6,157		미조면 송정리 839번지 등 일원	6,157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1	6,553		미조면 송정리 837번지 등 일원	6,553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2	기정		7,480	미조면 송정리 848번지 등 일원	7,480	관광숙박·휴게시설 (감 5,850㎡)		
	변경		1,630	미조면 송정리 847번지 등 일원	1,630			
나-13	4,520		미조면 송정리 878번지 등 일원	4,520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4	10,813		미조면 송정리 1009번지 등 일원	10,813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5	기정		24,872	미조면 송정리 903번지 등 일원	24,872	관광숙박·휴게시설 (감 285㎡)		
	변경	24,587	미조면 송정리 903번지 등 일원	24,587				
나-16	21,635	미조면 송정리 896-1번지 등 일원	21,635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7	신설	3,390	미조면 송정리 862번지 등 일원	3,390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2에서 분할)			

(표 계속)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적(㎡)		
상가 시설지구	다	소계	29,156	-	29,156		
		다-1	1,984	미조면 송정리 1122번지 일원	1,984	음식점	
		다-2	1,233	미조면 송정리 1119번지 일원	1,233	음식점	
		다-3	1,665	미조면 송정리 1126번지 등 일원	1,665	상 가	
		다-4	634	미조면 송정리 1221번지 등 일원	634	상 가	
		다-5	4,764	미조면 송정리 1226번지 등 일원	4,764	상 가	
		다-6	560	미조면 송정리 1034-4번지 등 일원	560	상 가	
		다-7	9,251	미조면 송정리 870번지 등 일원	9,251	상 가	
		다-8	7,083	미조면 송정리 1019번지 등 일원	7,083	상 가	
		다-9	1,982	미조면 송정리 1007-1번지 등 일원	1,982	상 가	
운동 오락 시설지구	라	소계	5,112	-	5,112	-	
		라-1	1,065	미조면 송정리 1167번지 일원	1,065	케이트볼장	
		라-2	4,047	미조면 송정리 1038번지 일원	4,047	해수풀장	
휴양문화 시설지구	마	소계	기정	36,167	-	36,167	증 4,022㎡
			변경	40,189	-	40,189	
		마-1	498	미조면 송정리 1175-6번지 일원	498	야외공연장	
		마-2	10,884	미조면 송정리 1175-4번지 일원	10,884	청소년수련원	
		마-3	4,063	미조면 송정리 1124-9번지 일원	4,063	야영장	
		마-4	1,245	미조면 송정리 880번지 일원	1,245	야영장	
		마-5	927	미조면 송정리 754번지 일원	927	공 원	
		마-6	7,636	미조면 송정리 752번지 일원	7,636	공 원	
		마-7	6,492	미조면 송정리 892번지 일원	6,492	전망대	
		마-8	기정	4,422	미조면 송정리 산352-4번지 일원	4,422	조경휴게소 (증 1,562㎡)
변경	5,984			5,984			
마-9	신설	2,460	미조면 송정리 산848번지 일원	2,460	야영장 신설		
기타 시설지구	바	소계	기정	257,211	-	257,211	감 902㎡
			변경	256,309	-	256,309	
		바-1	기정	257,211	미조면 송정리 1369번지 등 일원	257,211	녹 지 (감 902㎡)
			변경	256,309	미조면 송정리 1369번지 등 일원	256,309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 (공공 편익 시설지구)	가-1 / 가-2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권 장 용 도	주차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	
	최 저 한 도		-		
	가-3 / 가-4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자원순환관련시설	
			권 장 용 도	오수처리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1층 이하	
	최 저 한 도		-		
	가-5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권 장 용 도	샤워탈의장 / 화장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가-6 / 가-7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권 장 용 도	관리사무소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가-8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권 장 용 도	마을회관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나 (숙박 시설 지구)	나-1 ~ 나-10 / 나-12 ~ 나-15 / 나-17 (신설)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숙박시설	
			권 장 용 도	관광숙박·편의시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나 (숙박 시설 지구)	나-1 /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숙박시설	
			권 장 용 도	관광숙박·편의시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나-1 6	높이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최 고 한 도	4층 이하	
다 (상가 시설 지구)	다-1 /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권 장 용 도	음식점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다-2	높이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최 고 한 도	2층 이하	
	다-3 ~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권 장 용 도	상 가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다-9	높이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최 고 한 도	2층 이하
라 (운동·오락 시설지구)	라-1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권 장 용 도	게이트볼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라-1	높이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최 고 한 도	2층 이하	
라 (운동·오락 시설지구)	라-2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권 장 용 도	해수풀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라-2	높이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표 계속)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마 (휴양·문화 시설 지구)	마-1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권 장 용 도	야외공연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40% 이하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마-2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권 장 용 도	청소년수련원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40% 이하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4층 이하
			최 저 한 도	-
	마-3 / 마-4 / 마-9 (신설)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수련시설
			권 장 용 도	야영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40% 이하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마-5 / 마-6	용도	지 정 용 도	-	
		권 장 용 도	공원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40% 이하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마 (휴양·문화 시설 지구)	마-7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관광휴게시설
			권 장 용 도	전망대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 -
		높이	최 고 한 도	-
			최 저 한 도	-
	마-8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관광휴게시설
			권 장 용 도	조경휴게소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40% 이하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4층 이하
			최 저 한 도	-
바 (기타 시설 지구)	바-1	용도	지 정 용 도	-
			권 장 용 도	녹지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 -	
	높이	최 고 한 도	-	
		최 저 한 도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9 - 1038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관리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경상남도 남해군수

1.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2. 공고기간 : 2019. 7. 30. ~ 2019. 8. 14. (15일간)
3.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단위:원)

연 번	건축주(행위자)		구 분	위반건물 소재지	위반내용(위법내용)	반송 사유
	성명	주 소				
1	배O일	남해군 삼동면 독일로 71-1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166번지	○ 무단증축(건축법 제14조) - 1층 벽돌구조, 단독주택(창고), 26.4㎡ ○ 무단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 -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음식점, 70.24㎡	수취 인 부재

6. 유의사항

○ 위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이 불가능하여 알려드리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 남해군청 도시건축과(담당자: 정혜미 ☎055-860-34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19-1041호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7월 30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남해군에 거주·생활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본조례의 목적, 용어의 뜻, 책무 및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안 제1조~제4조)
- 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정책연구(안 제5조~제6조)
- 다.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등(안 제7조~제10조)
- 라. 청년의 참여확대 및 청년의 능력 개발, 청년의 고용확대 및 지역정착 등 생활안정,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및 권리보호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안 제11조~제15조)
- 마.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예산 등의 지원(안 제16조~제19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0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연락처 : 전화055-860-3467, 팩스 860-3703, e-mail : ms1128@korea.kr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거주·생활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5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으로 하되,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지역사회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청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 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 다. 청년의 고용확대,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 라. 청년의 지역 정착 및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관광, 경제, 주거, 복지, 문화, 교육 등 청년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남해군의회 의원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관계 기관의 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청년의 참여확대) ① 군수는 남해군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군정에 참여·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견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구성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 캠페인, 공모사업, 프로그램 운영, 청년네트워크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청년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청년의 지역정착 등 생활안정) ① 군수는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소득창출, 관내 취업 활성화 및 안정적 일자리 지원 등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의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주거, 학업, 취업, 결혼, 보육, 안전, 보건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제13조(청년문화의 활성화 및 공간마련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인 간 네트워크 및 국내외 문화교류 등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권리보호)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청년활동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경상남도,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지역정착 및 생활안정,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청년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청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알 림

남해군 상하수도사업소 고시 제2019 - 2호

남해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고시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 내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 남해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단위단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일

남 해 군 수

1. 대상지역 : 남해군 하수처리구역 내

2. 부과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1일 10m³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
-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자

3.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2,320,000원/m³
-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2,898,000원/m³

※ 다만, 타행위로 인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단가 산정에 반영되지 못한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은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 부과 외 추가적인 공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5. 시 행 일

-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
- 시행일 이전 종전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는 종전단가 적용

6. 기타 문의사항 : 남해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055-860-3333)